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034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2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4일, 김춘곤 의원(찬성자: 48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3년 9월 12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춘곤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, 약어를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1만  $m^2$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수정함. (안 제9조제2항)
- '물순환 시민위원회'를 폐지함.(안 제21조~제32조 삭제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“물순환 시민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)를 폐지하는 한편, 약어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 책무) ① · ② (생 략) ③ 사업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<u>시의</u>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 ④ (생 략) 제9조(사전협의 대상과 시기) ① (생 략) 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	제3조(기본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9조(사전협의 대상과 시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.
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 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 · 전문가 ·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. 1.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	<삭 제> <삭 제>

1)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 · 전문가 ·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한다.  
② (생 략)

현 행	개 정 안
<p><u>2.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빗물분담량 산출</u></p> <p><u>5.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</u></p> <p><u>6.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</u></p> <p><u>7.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</u></p> <p><u>8.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</u></p> <p><u>9. 지하수의 보전 · 관리 · 조사 · 개발 · 이용</u></p> <p><u>10.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</u></p> <p><u>11.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</u></p> <p><u>12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제2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수리지질, 응용 지질, 수문, 토양보전관리, 환경, 빗물관리, 물의 재이용, 도시계획, 자연재해,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2. 빗물관리, 물재이용, 지하수,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</p> <p>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p> <p>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</p>	<p>개정안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, 재난안전관리실장, 균형발전본부장, 물순환안전국장, 푸른도시여가국장을 포함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<u>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제23조(위원의 임기)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4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5조(결격사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<u>2. 위원이 품위손상 ·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3.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</u></p> <p><u>제2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</u></p> <p><u>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</u></p> <p><u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회의 일시 및 장소</u></p> <p><u>2. 출석위원의 소속, 성명</u></p> <p><u>3.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</u></p> <p><u>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<u>1. 빗물관리 분과위원회</u></p> <p><u>2.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</u></p> <p><u>3. 지하수 분과위원회</u></p> <p><u>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</u></p>	<u>&lt;삭 제&gt;</u>
	<u>&lt;삭 제&gt;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이 지명하며,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 단을 둘 수 있으며,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><u>제2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</u></p> <p>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</p> <p><u>제2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·연구 및 공청회, 토론회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30조(수당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제3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u>제3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2조(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다.</u>
<신 설>	<u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
<신 설>	<u>제4조 조 제목 중 “심의·자문”을 “자문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“시장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</u>

## ■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

### 가. 물순환 시민위원회 폐지 등

(안 제9조제2항, 안 제21조~제32조 삭제, 안 부칙 제1조~제3조)

- 먼저,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는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(이하 “물순환조례”)」 제21조에 따라 물순환 회복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위원회는 ’14.2월 「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」가 물순환조례로 전부개정<sup>2)</sup>되면서 동년 4월부터 설치·운영되었으나, 현행 물순환조례 제32조<sup>3)</sup>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난 시점(’16.4월)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

2) [시행 2014. 2. 9.] [서울특별시조례 제5617호, 2014. 1. 9., 전부개정]

3)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3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구하고 성과평가 없이 '20년까지 위원회를 구성·운영<sup>4)</sup>해 왔으며,

- 이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명목상 위원회 운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현행 물순환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그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.
- 서울시가 이처럼 존속기한 연장 없이 명목상 위원회로 구성·운영해 온 배경에는 위원회가 물순환 회복 정책 등에 대한 법적 심의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안 사항에 대한 단순 자문으로 국한되어 운영되어 오다 보니 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짐.
- 또한, 현재 서울시는 '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(조직 담당관-3566, '23.3.31.)'에 따라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은 지금의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필요 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음으로, 안 제9조제2항은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행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<sup>5)</sup>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임.

---

4) ※ 1기 '14.4.~'16.3., 2기 '16.4.~'18.3., 3기 '18.12~'20.12., 현재 물순환 시민위원회 미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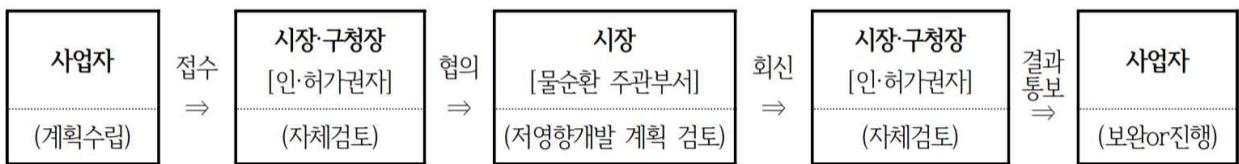
5)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9조(사전협의 대상과 시기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·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 단, 건축연면적의 변경,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(증축·개축·재축을 포함한다)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- 3. (생략)

② (생략)

## [표 2]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개요

-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도록 한 제도
-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과 시기
  - 사전협의 주체 :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
  - 사전협의 대상
    - ▶ 「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(광장, 녹지, 공공청사, 공원, 운동장, 주차장, 도시개발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, 학교, 하수도, 도로, 보도, 건축물 등)
    - ▶ 「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
    - ▶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
  - 사전협의 시기 :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
-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



- 지금까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연평균 37회(표 3) 참조) 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,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 자문을 규정한 현행 제9조제2항이 신설<sup>6)</sup>된 '18.1.4.일 이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 자문은 현행 명목상 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오고 있는 상황임.

## [표 3]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합계	2019	2020	2021	2022	2023	비고
실적	186	26	54	48	32	26	'23.8.1.기준

- 따라서, 안 제9조제2항의 개정이 이 같은 편법 운영을 시정하기 위한 시급한 정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,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 자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위해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됨.

6) [시행 2018. 1. 4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783호, 2018. 1. 4., 일부개정]

- 다음으로, 안 부칙 중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<sup>7)</sup>에서도 물의 재이용 정책에 관해 현행 기본조례 제21조<sup>8)</sup>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 심의·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순환조례의 위원회 폐지가 시행될 경우를 고려하여 부칙으로 이를 동시에 개정토록 하려는 것으로,
  -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서의 심의·자문 중 심의기능은 그동안 시행된 사례가 없고, 또한, 같은 조 각 호의 현행 심의·자문 대상들을 살펴볼 때 심의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바, 개정안과 같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#### 나. 기타 용어정비 등(안 제3조제3항)

- 안 제3조제3항은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약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---

7)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 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·자문에 따른다.)

1.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·자문에 부치는 사항

8)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 
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·전문가·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 
② (생략)

[표 4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3조제3항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 책무) ① · ② (생 략)          ③ 사업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에         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        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         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<u>시의</u> 관련 시책에         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          ④ (생 략)</p>	<p>제3조(기본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③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</u>  <u>“시”라고 한다)의</u> -----.          ④ (현행과 같음)</p>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08월 14일  
발의자: 김춘곤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  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민병주, 박석, 박영한,  
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 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 
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 
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 
윤종복, 이봉준, 이종배,  
이종태, 이효원, 이희원,  
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 
최유희, 최진혁, 한신,  
허훈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4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, 약어를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1만m<sup>2</sup>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수정함. (안 제9조제2항)
- 나. ‘물순환 시민위원회’를 폐지함.(안 제21조~제32조 삭제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지하수법」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시의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6장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조 제목 중 “심의·자문”을 “자문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“시장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 책무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사업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<u>시의</u>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9조(사전협의 대상과 시기) ① (생 략)</p> <p><u>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기본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 -----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사전협의 대상과 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<p><u>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</u></p> <p>제21조(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 · 전문가 ·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 
자문한다.

1.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 
에 관한 사항
2.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 
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  
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  
전협의에 관한 사항
3.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  
항
4. 빗물분담량 산출
5.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  
가
6.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
7.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
8.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
9. 지하수의 보전 · 관리 · 조사  
· 개발 · 이용
10.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  
보전
11.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  
델 개발
12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  
치는 사항

제2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  
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  
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 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 
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외  
부위원 위촉시에는 「양성평등

<삭 제>

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 
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 
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 
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 
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 
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  
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 
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 
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
다.

1. 수리지질, 응용 지질, 수문,  
토양보전관리, 환경, 빗물관  
리, 물의 재이용, 도시계획, 자  
연재해, 경제 또는 법률에 관  
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 
람

2. 빗물관리, 물재이용, 지하수,  
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  
행하는 민간단체(「비영리민  
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  
른 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  
하는 사람

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  
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 
로 행정2부시장, 재난안전관리  
실장, 균형발전본부장, 물순환  
안전국장, 푸른도시여가국장을  
포함한다.

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  
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

공동위원장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3조(위원의 임기)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4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

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25조(결격사유) 시장은 다음 각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이 품위손상 ·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

제2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

<삭 제>

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
2. 출석위원의 소속, 성명

3.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

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.

제2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둬다.

1. 빗물관리 분과위원회

2.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

3. 지하수 분과위원회

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,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,

<삭 제>

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2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
제2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· 연구 및 공청회, 토론회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.

제30조(수당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 
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  
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  
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위원회  
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  
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 
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 
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 
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  
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1항에  
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 
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  
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  
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 
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조 제목 중 “심의·자문”  
을 “자문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 
호 외의 부분을 “시장은 물 재  
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 
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 
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  
다”로 한다.